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개요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	3

I. 개요

가. 제안경위

2025년 9월 10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

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II. 검토의견

1.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생산품을 납품받은 사업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u>표준사업장</u>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u>직업재활시설</u> 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u> ----- ----- ----- -----.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와 같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지는 않으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¹⁾과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이 필요하나, 직업재활시설은 기초지자체 장애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직업재활시설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표준사업장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 기업과 유사한 경쟁력을 지향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당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장애인 연계고용”이라고 함.

현재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구분됨.

[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구 분	시설 기능
보호 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처럼 단순조립·포장·세척 등의 작업을 통해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
근로 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일반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장
직업 적응 훈련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설	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사회생활 적응 및 근로습관 형성을 위한 단계로, 시립직업적응훈련센터 등
----	--

그런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이를 연계고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직업재활 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정신건강증진법」 제27조제1항제2호²⁾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는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있으며, 이 중 직업재활시설(이하 ‘정신 직업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기능 향상, 직업적응 등 직업재활훈련을 지원하는 시설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정신건강증진법」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정신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법)	정신질환자등 ^{주)} 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 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 을 받거나 직업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 에서 직업훈련 을 받거나 직업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주) ‘정신질환자등’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함.

다만,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현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³⁾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되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모든 ‘정신질환자’가 현행법에서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연계고용의 취지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판로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은 설립요건으로 장애인 및 중증 고용 비중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정신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어 정신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표]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 설립요건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 근로자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 기준
	100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인 ~ 299인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근로장애인의 80% 이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근로장애인의 60% 이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10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80% 이상	

따라서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신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원 및 중증장애인 비중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인원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 한하여 연계고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고용노동부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신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원 및 중증장애인 비중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